■ 관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42호서식] <개정 2023. 5. 1.>

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

여행자 휴대품 신고서

- **신고대상물품이 있는 입국자**는 신고서를 작성·제출해야 합니다.
- **동일한 세대의 가족**은 **1명이 대표**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**성명과 생년월일**은 **여권과 동일하게** 기재해야 합니다.

성 명			
생년월일	년 월 일		
여권번호	외국인에 한함		
여행기간	일	출발국가	
동반가족	본인 외 명	항공편명	
전화번호			
국내 주소			

세관 신고사항 — 해당 사항에 "☑" 표시

1 휴대품 면세범위(뒷면 참조)**를 초과하는 "품목"**

면세 초과 있음				없음
술	담배	향수	일반물품	

- 물품 상세 내역은 뒷면에 기재

⇨ 자진신고 시 **관세의 30%(20만원 한도) 감면**

2 원산지가 FTA 협정국가인 물품으로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 있음☐ 없음☐

3 미화로 환산해서 총합계가 "1만 달러"를 초과하는 화폐 등(현금, 수표, 유가증권 등 모두 합산) 있음☐ 없음☐

[총 금액 :]

4 우리나라로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있음☐ 없음☐

ㄱ. 총포류, 실탄, 도검류, 마약류, 방사능물질 등
ㄴ. 위조지폐, 가짜 상품 등
ㄷ. 음란물, 북한 찬양 물품, 도청 장비 등
ㄹ. 멸종위기 동식물(앵무새, 도마뱀, 원숭이, 난초 등) 또는 관련 제품(웅담, 사향, 악어가죽 등)

5 동·식물 등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있음☐ 없음☐

ㄱ. 동물(물고기 등 수생 동물 포함)
ㄴ.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(육포, 햄, 소시지, 치즈 등)
ㄷ. 식물, 과일류, 채소류, 견과류, 종자, 흙 등
- 가축전염병 발생국의 축산농가 방문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6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있음☐ 없음☐

ㄱ. 판매용 물품, 회사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등
ㄴ.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반입한 물품
ㄷ. 세관에 보관 후 출국할 때 가지고 갈 물품
ㄹ. 한국에서 잠시 사용 후 다시 외국으로 가지고 갈 물품
ㅁ. 별송품, 출국할 때 "일시수출(반출)신고"를 한 물품 등

본인은 이 신고서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: (서명)

< 뒷면에 계속 >

1인당 "품목"별(술/담배/향수/일반물품) 면세범위

▸ 해외 또는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하거나, 기증 또는 선물받은 물품 등으로서

술	2병	합산 2ℓ 이하로서 총 US $400 이하
담배	- 궐련형: 200개비(10갑) - 시 가: 50개비 - 액 상: 20㎖(니코틴 함량 1% 이상은 반입 제한) ▸ 한 종류만 선택 가능	
향수	60㎖	
일반물품	미화 800달러 이하 ▸ 다만,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에 합격한 것으로서 총 40kg, 총 금액 10만원 이하 (물품별로 수량·중량 제한)	

* 만 19세 미만인 사람(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)에게는 술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.

면세범위 초과 "품목"의 상세내역

- **면세범위 이내 "품목"** - 작성 생략
- **면세범위 초과 "품목"** - 해당 품목의 **전체 반입내역** 작성

예 시 : 술 3병, 담배 10갑, 향수 30㎖, 시계(가격 1천 달러) 반입 시
→ **술 3병, 시계(가격 1천 달러)** 작성(면세범위 이내인 담배, 향수는 작성 생략)

품 목	물 품 명	수량(또는 중량)	금 액
술			
담배			
향수			
일반물품			

※ 세관 신고사항을 **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한 경우** 가산세(납부세액의 40% 또는 60%)가 **추가 부과**되거나, **5년 이하의 징역** 또는 **벌금**(해당 물품은 몰수) 등의 **불이익**을 받게 됩니다.

95mm×245mm[백상지 100g/㎡]